

윤석열 정부의 노조 혐오 발맞추는 노동부의 억지 노동 행정

포스코지회 조직형태변경 노조설립신고, 반려 결정한 노동부 포항지청 노동부장관 한마디에 묻지마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

개요

- 제목 : 노동조합 자율성 탄압, 노동부 억지 노동 행정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1시 / 대구지방노동청 앞
- 주최 :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 문의 : 금속노조 포항지부 방성준 사무국장 010-2674-1266

○ 포스코지회는 2022년 11월 8일 노동부 포항지청(이하 포항지청)에 노조설립신고를 했습니다. 이 노조설립신고에 대해 포항지청은 한차례 반려 조치를 한 후 12월 7일에 최종 반려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12월 26일 노동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속노조의 징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불과 3일 뒤인 12월 29일 포항지청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한 제명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 포항지청은 포스코지회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처리 과정에서 금속노조 징계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음을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이하 포항지부)는 포스코지회의 노조설립 신고 이후 근로개선1과 과장과의 면담, 근로개선1과 팀장과의 면담을 진행했고, 조직형태변경 총회 과정에서 확인된 금속노조 규약, 규정,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위반 사실도 알렸습니다. 지회 임원들의 징계 제명도 얘기했지만 법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하는 과정에서도 금속노조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조사는 없었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책임회피를 위한 노조 혐오에 발맞추기 위해 노동부는 스스로 결정한 노조설립신고에 대한 반려 결정과 상반되는 억지 노동 행정으로 금속노조의 자율성을 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포항지부는 시정명령 의결요청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포항지청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지청의 시정명령 의결요청에 대해 대구지방노동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 경북본부와 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노조를 악마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와 사실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3월 23일 11시 노동부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면 항의방문도 할 예정입니다. 민주언론 창달에 힘쓰는 언론 노동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노조혐오 발맞추기, 노동부의 억지 노동 행정이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인가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앞세워 노동개혁을 추진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개혁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지 친일외교와 고물가·고금리, 경제위기로 인해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반전시키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묻지마 노동탄압만 있을 뿐이다.

조선, 화물, 건설업 등 대부분의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파견과 살인적 장시간 노동 그리고 다단계 하도급 등은 노동시장의 심각한 이중구조를 더욱 확대, 심화시켜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불법, 편법 경영과 노동자 살인에 묵인한채 어떠한 입장이나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직 권리보장 요구와 절박한 노동현장을 바꾸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정치투쟁, 불법파업으로 내몰며 노동조합을 악마화하기에 급급할 뿐이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단결권을 모두 박탈하려는 반헌법적 노동관까지 보여주고 있다.

포스코지회는 지난 2022년 11월 3일, 4일 조직형태변경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 투표는 264명의 총인원 중 172명 참여에 115명의 찬성(66.86%)으로 가결되었다. 지회는 11월 8일 노조설립신고를 했지만 노동부 포항지청은 11월 15일 보완을 명령했다. 지회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조직형태변경 2차 투표를 진행했다. 2차 투표는 247명의 총인원 중 143명이 참여해 100명의 찬성(69.93%)으로 가결되었다. 2차 투표 뒤에 다시 노조설립신고를 했지만 포항지청은 12월 7일 최종 반려를 결정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노조설립신고에 대한 보완 명령이 내려진 이후 11월 21일 노동부 포항지청 근로개선1과 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을 통해 ①조합비를 노조로 납부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투표 참여 ②총회 사안임에도 조합원들에게 토론 기회가 없었음 ③소집공고 기간 위반에 대한 문제 ④노조에서 제명되어 소집권이 없는 자들이 소집한 총회 임을 설명했다. 그리고 지회 임원 3명의 징계 제명 사실과 징계 사유인 노조 규약·규정과 지회 규칙 위반에 대한 내용도 알려 주었다. 지부는 12월 6일 근로개선1과 팀장과 한차례 더 면담을 진행했다. 두차례 면담에서 포항지청은 지부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겠다고며 정치적인 결정은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포항지청의 반려 결정이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2월 26일, 노동부 장관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느닷없이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의 탈퇴를 막았다며 금속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불과 3일 뒤인 12월 29일 포항지청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한 제명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포스코의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금속노조에 가입과 탈퇴를 해왔다. 그리고 수 많은 노동자들은 포스코의 악랄한 부당노동행위에 본인의 의사와 다른 탈퇴를 선택해야 했다. 금속노조를 탈퇴시키기 위한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에 눈감아온 노동부가 또 다시 금속노조 탈퇴를 위해 나서는 것이다.

2023년 2월 2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당 건에 대한 심문회의가 있었다. 심문회의에서 포항지청은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한 이유를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했고 주장에 대해 증빙할 증거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항지청에게 주장을 증빙할 자료 제출을 고지하면서 판정을 보류했다.

포항지부는 1차 심문회의 이후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과 관련한 포항지청장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포항지청은 징계 당사자들의 징계처분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및 규약 위반 민원이 있었고, 포스코지회의 노조설립 신고서 처리 과정에서 금속노조의 징계 처분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스코지회의 노조설립신고 이후 진행한 두 차례 면담에서 포항지청은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및 규약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었다. 뿐만아니라 시정명령 의결요청 과정에서도 단 한번의 사전 조사도 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와의 면담에서 없었던 문제가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검토' 한마디에 갑자기 생긴 것이다.

포항지부가 설명한 금속노조 징계 제명자들의 사유와 징계 과정까지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한 이후 포항지청이 내놓은 결과가 노조설립신고 반려이다. 포항지청이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 노동 행정이다. 3월 24일에 진행될 2차 심문회의 결과는 당연히 기각이 되어야 한다. 만일 심문회의 결과가 시정명령으로 결정이 난다면 윤석열 정부의 노조혐오를 위한 노동부의 억지 노동 행정이라는 치욕적인 주홍글씨로 남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기업의 노동자 살인과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산안법 위반 등을 막기 위해 수많은 진정을 노동부에 제기해왔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자율성, 단결권 보장을 위한 노동 행정을 해야하는 노동부가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과 기업의 민원처리 창구 역할을 계속한다면 노동자들의 큰 저항과 투쟁은 더 커질 것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년 3월 23일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첨부 자료) 기자회견 박경순 노무사 발언

현재 노동부는 법적 판단보다 윤석열과 여당, 그리고 그 하수인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억지 판단으로 포스코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가 문제 삼고 있는 원형일 등의 조합 징계, 금속노조 규약의 핵심 쟁점은, 결국 금속노조의 일개 집행 조직인 포스코지회가 '비법인 사단' 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은, 노동청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1조 제 1항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하나의 단위 노동조합이 규약 위반 등의 의결을 한 경우에만 결의처분 시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노동부는 금속노조를 하나의 단위 노동조합이 아니라 상급단체나 연합단체로 포스코 지회를 하나의 단위 노동조합으로 왜곡하고 결의처분 시정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상급단체나 연합단체가 아닌 하나의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입니다.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하나의 단위 노동조합인 금속노조의 결의가 아닌, 단위 노동조합의 하위 조직인 일개 지회의 결의인 이상, 행정관청이 이에 개입 할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포스코 지회가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노동청과 같은 행정관청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며 사법기관에 판단을 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 어떤 법규정에도 노동청이 금속노조의 하위 조직인 일개 지회가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기능을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준법 준법 운운하고 있는 현재 윤석열과 이정식 노동부 장관, 노동청이 하고있는 행위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한편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의 일개 집행 조직에 불과하므로 독립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이고, 지부, 지회는 집행 등 운영의 편의를 위해 지역,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지부 지회 조직을 나눠놓은 것일 뿐입니다. 오로지 의사결정은 금속노조의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이루어져야하며, 지부와 지회는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포스코 지회는 금속노조의 결정 없이 조직형태변경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노동청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 96120 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여, 포스코 지회가 자유로이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다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판결은 원칙적으로 지회 조직은 의결 주체가 될 수 없지만, 굉장히, 아주 예외적으로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며, 산별노조와 지회와의 관계가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할 정도여야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법원도 해당 판결에서 폭넓게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처우하여 규정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금속노조와 포스코지회는 다양한 조합활동과 법적 대응을 함께하는 등 실질적으로도 산별노조와 하부 지회의 관계에서 운영이 되었으므로 해당 판결에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윤석열과 이정식 노동부장관 그리고 노동부는 금속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근거 없는 행정개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의 결의가 잘 못 났다고 주장하기 위해 들고 온 자료들은 너무 빈약하고 설득력 없는 자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참고로 앞서 규약 시정 명령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노동부의 자료가 너무 빈약하여 자료를 보충해서 다시 심문 회의를 개최하자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마음 이해 갑니다. 금속노조가 행한 처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료는 빈약하고 설득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담당 감독관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노동부 관료들이 없는 법적 근거나 증거 자료를 만들게 하는 헛수고를 하게 하지 말고, 윤석열과 이정식 노동부장관 그리고 노동부는 과도한 개입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노동위원회가 다시 심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노동부의 억지 주장을 완성시키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도 합니다. 어차피 한 통속이고, 답은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은 법전에 있습니다만, 현재 노동부는 법이 윤석열과 이정식 노동부장관, 그리고 여당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부가 이들의 입맛에 맞는 처분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에 연연하지 않고 투쟁해나갈 것이고, 포스코 주식회사에서 금속노조 깃발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자료) 포스코지회 조합원 현황(2022년 9월 20일까지)

입금날짜	지부	지회/이름	납입월	인원수
21.01.20	포항	포스코포항	2021년 1월	78
21.02.23	포항	포스코포항	2021년 2월	77
21.02.28	포항	포스코포항_최저(해고자)	21.01-21.02	6
21.03.22	포항	포스코포항	2021년 3월	77
21.04.21	포항	포스코포항	2021년 4월	77
21.05.20	포항	포스코포항	2021년 5월	77
21.06.18	포항	포스코포항	2021년 6월	78
21.06.28	포항	포스코포항_해고자_최저	21.03-21.06	12
21.07.20	포항	포스코포항	2021년 7월	80
21.08.20	포항	포스코포항	2021년 8월	82
21.09.17	포항	포스코포항	2021년 9월	84
21.10.20	포항	포스코포항	2021년 10월	82
21.11.25	포항	포스코포항	2021년 11월	79
21.11.29	포항	포스코포항_최저	21.07-21.12	18
21.12.20	포항	포스코포항	2021년 12월	77
22.01.20	포항	포스코포항	2022년 1월	72
22.02.18	포항	포스코포항	2022년 1월	5
22.02.18	포항	포스코포항	2022년 2월	76
22.03.18	포항	포스코포항	2022년 3월	81
22.04.20	포항	포스코포항	2022년 4월	73
22.05.20	포항	포스코포항	2022년 5월	70
22.06.20	포항	포스코포항	2022년 6월	66
22.07.20	포항	포스코포항	2022년 7월	66
22.08.19	포항	포스코포항	2022년 8월	66
22.09.20	포항	포스코포항	2022년 9월	64

(참고 자료) 포스코지회 조직형태변경 1차 투표 결과

포스코지회 조직형태 변경 투표결과

2022년 11월 3일 06시 00분부터 2022년 11월 4일 17시 00분까지 실시 된 포스코지회 조직형태 변경(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전환) 찬반 투표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총인원수	264	투표참여자수	172	투표율	65.15%
안건	찬성		반대		
	득표수	득표율	득표수	득표율	
조직형태 변경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전환)	115	66.86%	57	33.14%	

2022년 11월 4일

포스코지회 선거관리위원장 이 범 동



공 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2항에 따라 금속노조 포항 포스코지회 조직형태 변경(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전환)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결과 다음과 같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총인원수	247	투표참여자수	143	투표율	57.89%
안건	찬성		반대		
	득표수	득표율	득표수	득표율	
조직형태변경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전환) 조합원 찬반투표	100	69.93%	43	30.07%	

2022년 11월 30일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순섭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수신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장 귀하

(경유)

제목 지청장 면담 요청 건에 대한 회신

1. 귀 지부의 2023. 3. 2.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 관련 지청장 면담 요청 건」 관련입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10조(설립의 신고) 및 제12조(신고증의 교부)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가 제출되면 행정관청은 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요건 심사를 통해 신고증 교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귀 소속 노동조합에서 제명 징계 처분된 조합원 6명이 2022. 12. 29. 우리 지청에 신청한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 요청 민원은 현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이해관계자 일방을 면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 시정명령 의결요청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추가 심문 회의 전까지 경북 지방노동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 지청은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 요청 민원에 대해서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결과 및 법령에 따라 처리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근로감독관 **변진기**

팀장

신제현

과장

전일 2023. 3. 7.
박세호

협조자

시형 근로개선지도1과-2948 (2023. 3. 7.) 접수

우 3776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 (대창동 940 고용노동부 / 포항지청) <http://www.moel.go.kr/pohang>

전화번호 054-271-6753 팩스번호 0508-8230-0534 / cniks@korea.kr / 비공개(6)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수신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장 귀하
(경유)

제목 사실관계 확인 요청 건에 대한 회신

1. 귀 지부의 2023. 3. 9.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 관련 사실관계 확인 요청 건」 관련입니다.
2. 질의 관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지청에서는 포스코지회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처리 과정에서 귀 소속 노동조합에서 행한 징계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 조합원 6명이 징계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및 규약에 위반된다는 민원 서류를 우리 지청에 제출함에 따라,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2항 및 규약 제75조, 상벌규정 제8조 위반
3. 해당 시정명령 의결요청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문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사실관계 확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2차 심문의 전까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근로감독관 변진기

팀장

신제현

과장

신결 2023. 3. 14.
박세호

협조자

시행 근로개선지도1과-3053 (2023. 3. 14.) 접수

우 3776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 (대잠동 940 고용노동부 / 포항지청) <http://www.moel.go.kr/pohang>

전화번호 054-271-6753 팩스번호 0508-8230-0534 / cniks@korea.kr / 비공개(6)